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Contents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006 들어가며

009 제1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010 1. 공익신고의 필요성
- 012 2.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 014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017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018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 033 2. 공익신고의 접수
- 044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067 제3장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068 1. 개 요
- 070 2. 비밀보장
- 072 3. 신변보호
- 074 4. 보호조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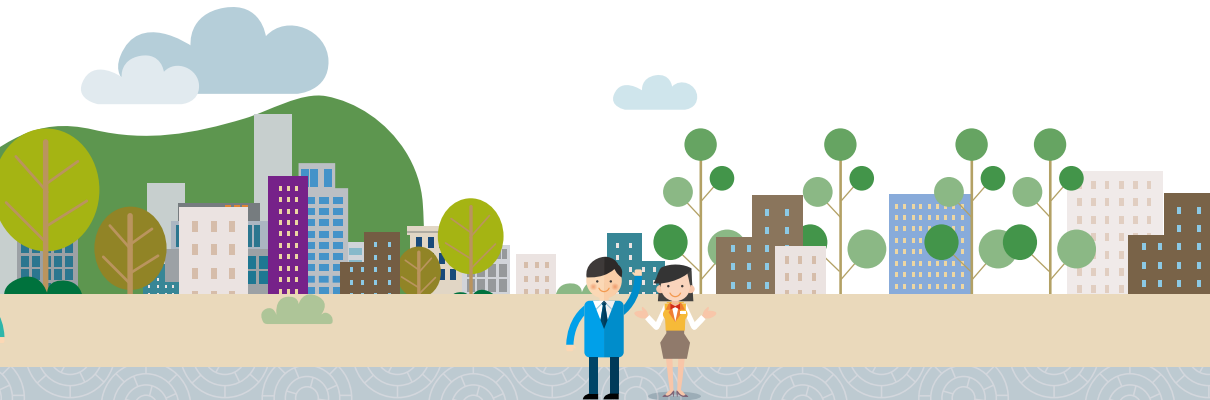
093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 094 1. 개요
- 095 2. 보상금
- 100 3. 포상금
- 102 4. 구조금
- 104 5. 중복 지급의 금지 및 환수

109 제5장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11 1.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
- 114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
- 115 3. 공익침해행위의 선제적 예방
- 116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 117 5. 민간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119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들어가며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한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으로 하인리히 법칙(1대 29대 300법칙)이 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해 중상자가 1명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있었고,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를 겪었던 잠재적 부상자가 무려 300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각종 대형 참사들은 사전에 그 징후와 경고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300번의 징후를 알려주는 공익신고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안심을 더해주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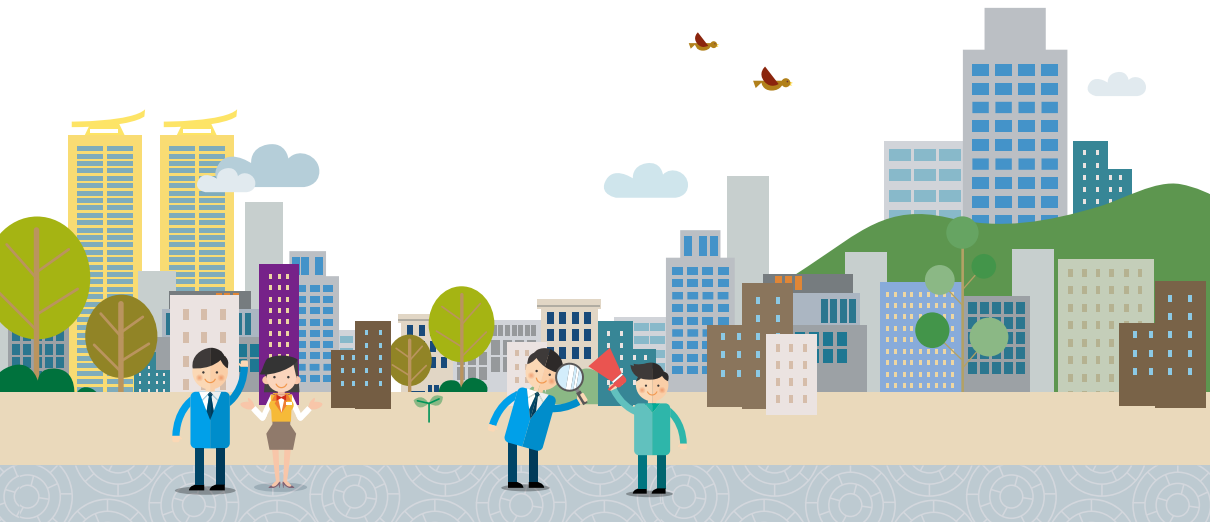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일선의 담당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제작·배포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을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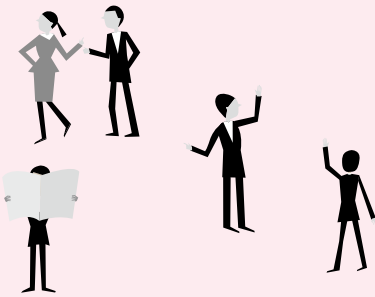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시 유의사항 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1. 공익신고의 필요성
2.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제1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1.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는 그 복잡성과 전문성이 크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서 사후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신고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이다.

반면,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적·자율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인이 이를 찾아내어 신고하기에도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해주고,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내부 감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으로써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 보잉사 여객기 부적격 부품 사용

- 2006년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737 여객기에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전 보잉사 직원의 내부고발로 드러남
- 보잉사 감사팀이 실제 문제를 발견해 지적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입을 다물게 했다고 밝힘
- 당시 보도에 따르면 보잉 737기의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잉 737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음

» 폭스바겐 배기가스 절감장치 조작

- 2015년 폭스바겐에서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각국 정부에서 판매금지, 리콜,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2011년에 폭스바겐의 기술자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보고한 바도 있었으며, 미국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몇 주 전에 디젤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폭스바겐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았고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지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다.



법 시행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 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해행위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은 1989년 해상유전인 파이프 알파에서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직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안전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식품의 위장 표시 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사건 등이 사업장 내부 근로자 등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은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 1 | 해외 입법례

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한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공익통보자 보호법(일본)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근로자 ● 일반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근로자 ● 일반공무원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279개 법률 발칙·행정 처분 대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행위 ● 법적준수의무 위반 ● 부정행위 ● 근로자의 건강·안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 ● 환경의 보전 ● 소비자이익 옹호 ● 공정한 경쟁 확보 ※ 약 45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공공단체 중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1차) → 정부기관(2차) → 대외제보(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1차) → 행정·감독기관(2차) → 외부기관(3차)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기재 및 증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방법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방법 미규정
신고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믿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조치방안 마련 ● 행정·감독기관은 조사 및 조치 실시 ● 권익위는 확인 후 조사·수사 기관 이첩 ●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타접수 기관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보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권고 ● 민형사상 책임감면 ●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 노동법원 판결 시까지 신분보장 ● 신고금지 규정의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 무효, 파견계약 해제 무효 등 원상회복 ● 불이익취급 금지
보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에 보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 노동법원 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등에 따라 재판청구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최대 20억원, 내부신고자), 포상금(내·외부 신고자, 최대 2억원) 및 구조금(내·외부 신고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강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 판결 가능(상한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제재 조항 없음

참고 2 |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공익신고	부패신고
근거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279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신고처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 ②소관 행정·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제재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③특별보호조치 불응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④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청(신변보호사실 유출 시 형사처벌)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20억, 최저 한도: 20만원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30억, 최저 한도: 없음
보상금 상황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규정 없음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 2억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 2억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	명시적 규정 없음 (보상금으로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 가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2장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가.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하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 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위반시 제재수위도 높아 사전에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적으로 정한 것이다.

해외 입법례

- ▶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 포괄적 정의 규정
 - 범죄행위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위반행위 및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행위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개인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위험행위 또는 환경 파괴행위
-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 개별적 열거규정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별표로 열거한 법률(약 450개 법령)이 규정하는 죄의 범죄사실(법률에 의거한 명령위반 포함)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279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관련 보상례

- ▶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식품위생법 상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신고를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식약처 포상금 고시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식약처 포상금 고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 동 위반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결함(2014. 6. 16)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1) 5대 공익분야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이다. 5대 공익의 범위는 일률적·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79개 법률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 대상

법 별표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180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정하였으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민의 생활 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등의 법률을 추가하여 2016년 1월부터 279개로 확대되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는 279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등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79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279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279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벌칙의 종류 (형법 제41조)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279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시행령 제3조)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 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최근 법원은 실제 해당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상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없다고 의결함
-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9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나. 공익신고의 개념

1)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위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독권·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 제도가 아니라 이미 279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관련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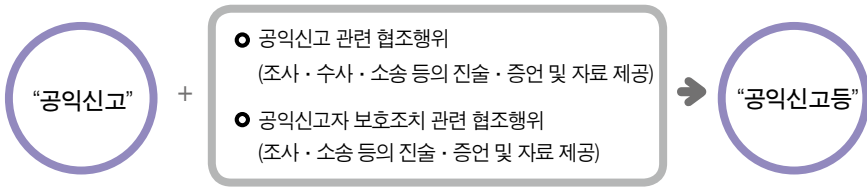


공익신고의 형태

- ▶▶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진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고소 :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고발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제보 :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익신고등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이라고 한다.



공익신고등 (예시)

- ▶▶ 공익신고 관련 협조행위
 - 식품회사의 유해물질 포함 농수산물 유통 등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식품회사 근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협조하여 식품회사의 불법행위를 진술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
 - 염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을 신고한 후 해고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인사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의 지시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적격을 내부자 등으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이익·공정거래·환경 분야에 관련해서는 내부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이 제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자로 신고주체를 한정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색출이 용이하고 유추 가능성이 높아져 신고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별도로 내부 공익신고자를 정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였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설 내용

- ▶▶ (보호)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호조치 신설
-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법, 시행령 내용)

-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법 제2조제7호가목)
-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법 제2조제7호나목)
-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1호)
-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2호)
-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3호가목)
-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3호나목)
- ▶▶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조의2제4호)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와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내부 공익신고자 판단시 고려사항



① 근무관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간의 장단, 계속성을 불문하고 피신고자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근무관계에 있는 신고자도 포함
-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맺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인턴직원 등도 포함됨

② 계약관계

-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갑을관계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 구매자, 일반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일시적인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되며, 계약에 따른 직접 업무 수행자에 한정되지 않음

③ 사실상 영향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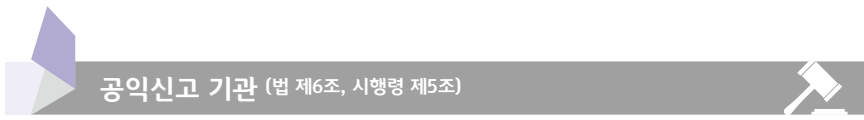
- 피신고자와 신고자가 직접 고용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신고자가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임
-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피신고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는 계열회사 관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의 직원

④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지도, 관리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 지도, 관리 감독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라. 공익신고 기관의 개념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이라고 한다. 법 제6조에서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서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다.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 ▶▶ 국민권익위원회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 중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는 279개 법률에 해당 공공단체의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단체라도 279개 법률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공익신고 기관별 공익신고 (예시)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의 대표자
 - 식품회사의 대표자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납품 및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 ▶▶ 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
- ▶▶ 수사기관
 - 지방경찰관서에서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 ▶▶ 국회의원
 - 국회의원에게 철도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수사의 착수,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Q 공익신고 기관으로서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A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조사기관의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공공단체도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소속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공공단체가 공익신고 기관이 될 수 있다.

Q 국회의원의 경우 청원과의 공익신고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A 공익신고는 「국회법」 및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청원’과는 다른 제도이다. 청원의 경우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 및 구조 등이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보상 조치를 받을 수 없다.

Q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이 접수·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Q 기업도 공익신고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A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나 소비자가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같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용자나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적용되며, 기존의 신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는가?

A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러한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2. 공익신고의 접수

가.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

-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 공익침해행위 내용
- »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1]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직 업				
피신고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직 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나. 접수시 확인 사항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가명신고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①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②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p> <p>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동의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p> <p>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p> <p>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동의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다. 공익신고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공익신고자등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 보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다.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법 제23조)

-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 공익신고등이 있을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책임의 감면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 등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형벌·징계 뿐 아니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4)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5)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가명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 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에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Q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A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는가?

A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조사 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 문의·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Q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가?

A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관은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①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가 279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적합하다.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한다. 법 제8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기관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익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가?

A 변호사가 신고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 따라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변호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것은 변호사가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지, 숨어 있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Q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법 제8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 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

A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

A 공익신고를 할 때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된 사항만으로도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 사건을 송부하거나 조사·수사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의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공익신고할 수 있는가?

A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개별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종결처리 될 수 있다.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가. 개요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행정, 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수사기관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수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재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공공단체,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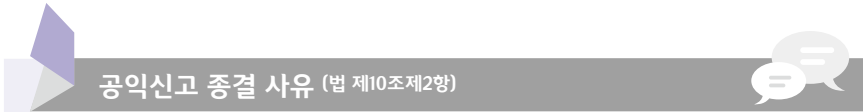
나. 공익신고 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

1)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2013.5.16.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32532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8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호 조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충실히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 인신상 ·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분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 ·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제2장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익신고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문서 포함 내용 (영 제11조제3항)

- ▶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 ▶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신고내용의 수사

수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 등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입건·송치·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발생하는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진행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에 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사·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법 제11조제1항)

▶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の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제1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사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특별사법경찰을 모두 포함한 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위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관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서 등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도록 한다.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리한다.

신원관리카드 및 조서 등 작성 예시

공익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예시)

관리번호	2012 신원관리 제1호		
사건번호	2012 공익신고 제1호		
법원사건번호			
피신고자 성명	박 침 해	주임검사	이 검 찰

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성명	김 공 익	가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10930 - 1234567	직업	(주)환경침해 과장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010-123-4567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본인서명	본명	김 공 익	신분
가명		홍 길 동		

작성원인	공익신고자 등의 신청 · 조사담당자(사법경찰관)의 직권		
최초 작성일자	2011. 9. 30.	최초 작성자 성명	이 조 사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2011. 9. 30.	사건종국 결정일자	

확 인 조 서(예시)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주소	기재 생략					
직업(직장명)	기재 생략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재 생략	직장	기재 생략	자택	기재 생략

위의 사람은 “수질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의혹” 신고사항(접수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의 신고인으로서 2011. 9. 30. 14:00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4) 재조사·재수사 등 후속조치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조치 사항 (법 제9조제5항)

- ▶▶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사례 (예시)

- ▶▶ 기준 미달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한 공익신고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당 농산물의 회수 또는 친환경 인증 표시 삭제 등 추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었음
- ▶▶ 편육 제품 제조중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공익신고를 이첩하자 조사기관에서 해당 공장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에 대해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권이 신설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재수사 요구 사유

- ▶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 ▶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 그 밖에 재조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 공익신고 이송·재이첩(조사·수사기관)

1) 공익신고의 이송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바로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이송 (예시)

- ▶▶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이 안전간판 설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신고를 함
- ▶▶ 공익신고를 접수한 ○○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공익신고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을 확인
- ▶▶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A씨에게 통지함

다만,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적시에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시행령 제13조)

- ▶▶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공익신고의 재이첩

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의 송부(공공단체, 국회의원)

1) 송부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나 국회의원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송부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송부 기관의 결정

- ▶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279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 ▶ 279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 ▶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송부할 기관을 결정
 -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2) 공익신고 송부 및 통지

공공단체 또는 국회의원은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 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공개 사건의 송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송부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 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익명처리 송부 시 유의사항

- ▶▶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 ▶▶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의 직업, 소속 기업 및 담당 업무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

익명처리 송부 (예시)

신고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	-------	-------

신 고 자	이름	김공익	주민등록 번호	7109330-1234567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010-1234-5678	직업	회사원

피 신 고 자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02-123-4567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상기 본인은 불량식품(주)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공익유통(주)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불량식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공익 신고 내용
 2011. 9. 30.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 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증거 자료 등 첨부 서류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신고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	-------	-------

신 고 자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회사원

피 신 고 자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02-123-4567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상기 본인은 [redacted] 불량식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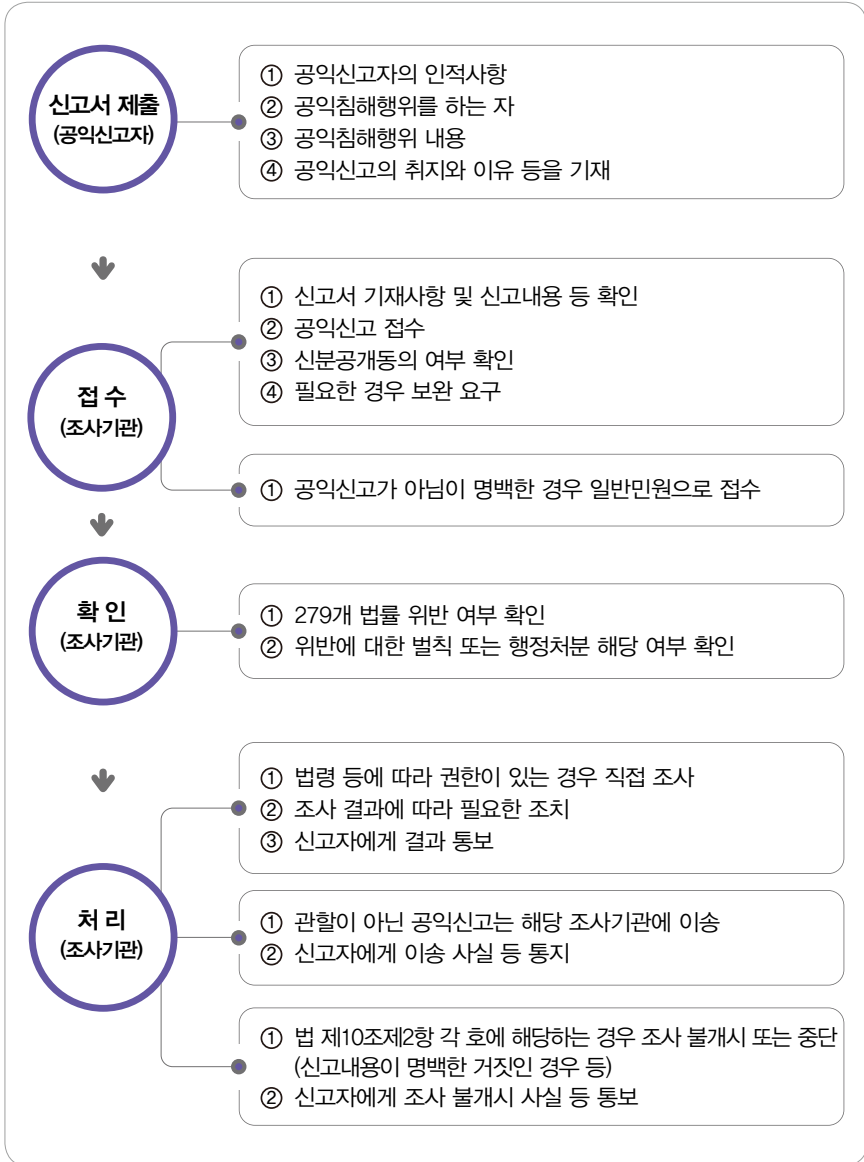
공익 신고 내용
 2011. 9. 30.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 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redacted] 이러한 위해식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증거 자료 등 첨부 서류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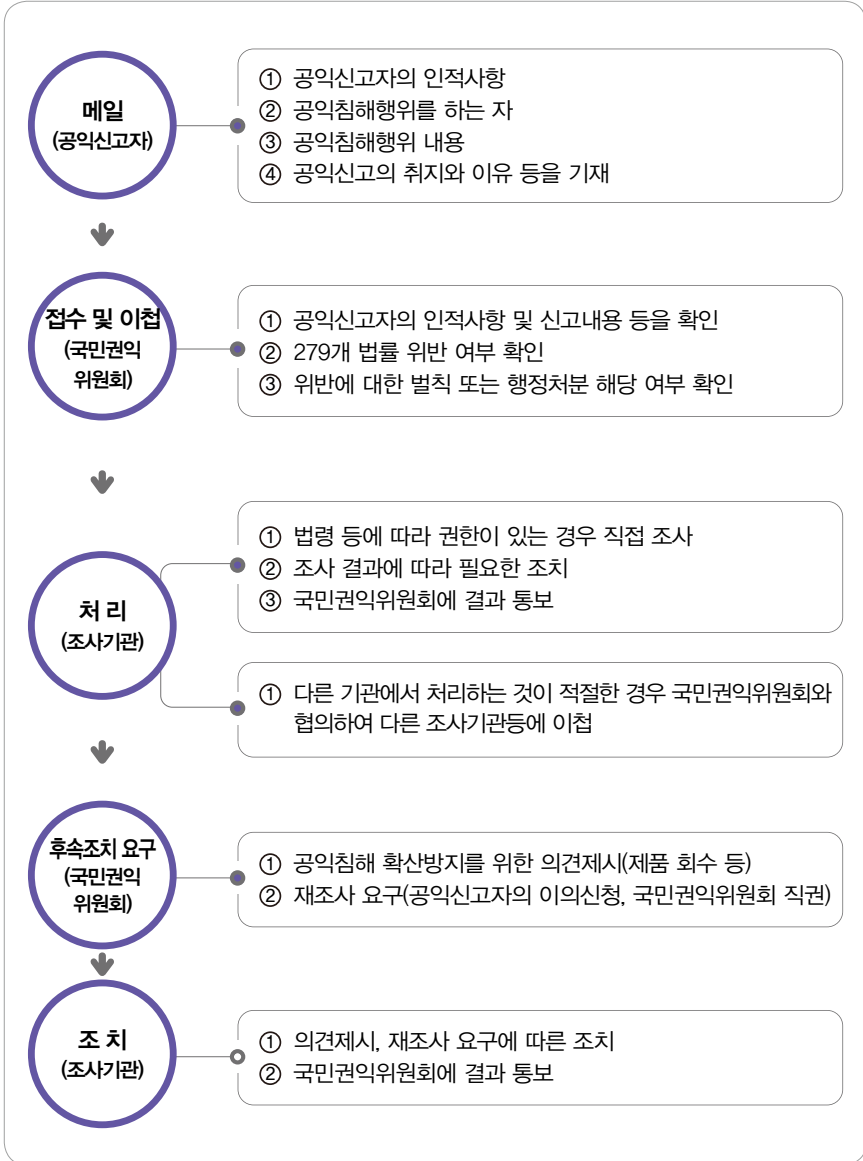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이첩·처리 흐름도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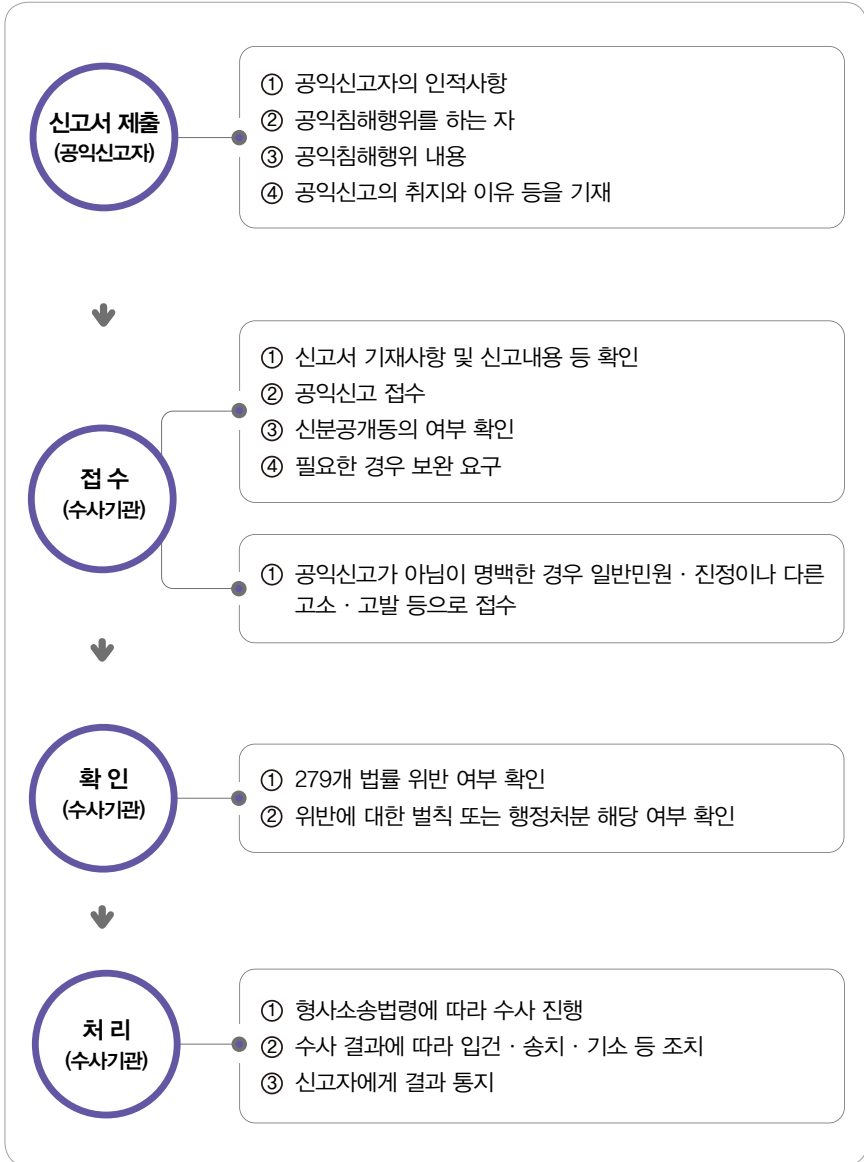
제3장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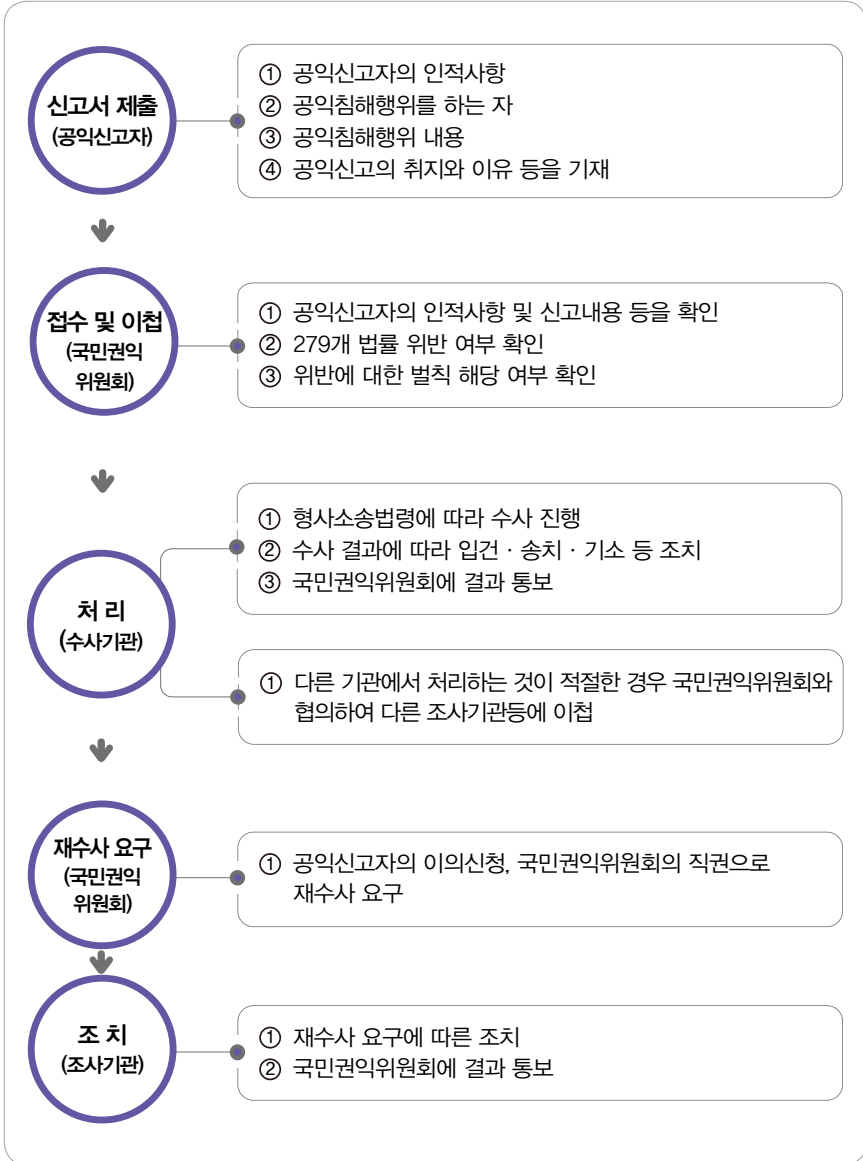
제5장

별첨

수사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수사기관의 공익신고 이첩·처리 흐름도



제1장

제2장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익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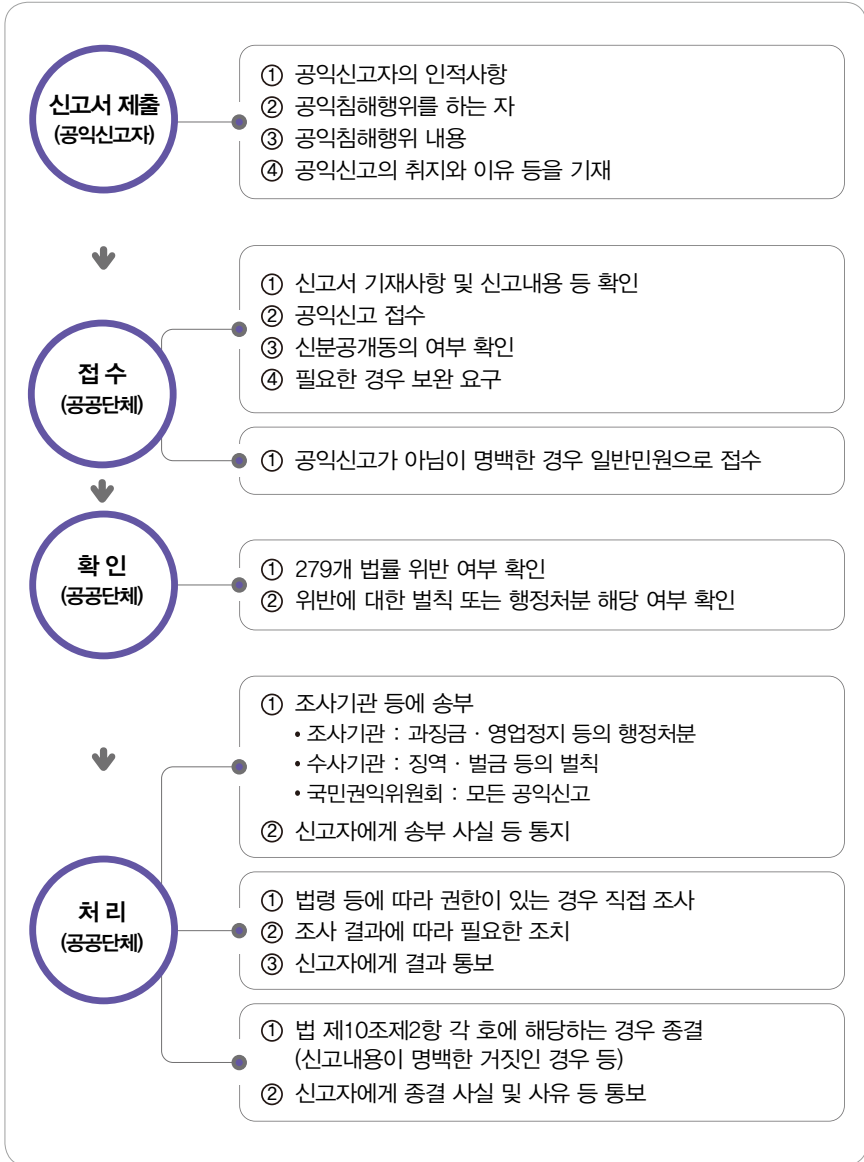
제3장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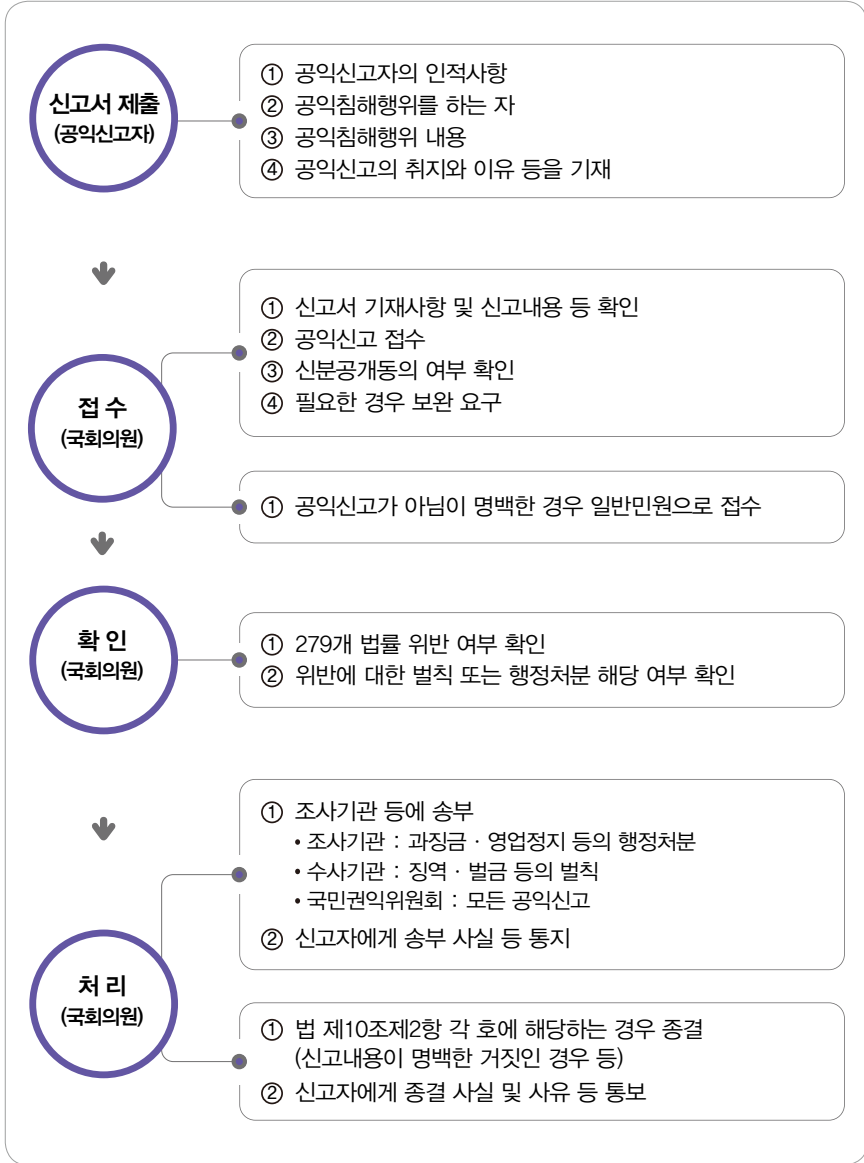
제5장

별첨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제1장

제2장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Q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공익침해행위가 관할 및 직무범위 내의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Q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관할 및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Q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종결하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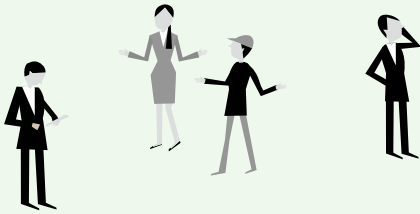
A 그렇다. 법 제11조는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의 준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제3장

1. 개요
2. 비밀보장
3. 신변보호
4. 보호조치

제3장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1. 개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부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부적응자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양심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분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여 공익 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비밀보장 의무 위반, 불이익조치,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등 공익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 주체인 그 법인·개인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 주체인 법인·개인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양벌규정의 도입은 ‘UN 반부패협약’ 및 ‘OECD 뇌물방지협약’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 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 신분
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 보호
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2. 비밀보장

가.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보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피신고자 등이 각종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위해 공익신고 관련 문건 제출을 임의로 요구할 경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법 제12조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비밀보장 위반 사례



- ▶▶ 공익신고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키고,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신고자에게 합의 중용

 - A기관은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 접수 후 즉시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신고자는 해당업체의 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분 노출로 피해를 입음

- ▶▶ 공익신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자의 신분 노출

 - B기관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부터 내부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조사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의도하지 않게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하였고, 그 결과 해당 원장은 신고자인 보육교사에게 불이익을 행사
 - C기관은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자에게 연락하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
 - D기관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

- ▶▶ 공익신고 관련 문서를 소송(수사) 관련 자료로 공개 법정 등에 제출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E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공
 - F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음을 보충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된다.

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공개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허위 신고내용 등의 공개로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신변보호

가.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공익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위협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예방적 보호수단으로 긴급성, 신속 대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변보호 요청 사례

- » 마을 이장의 산림훼손 및 불법건축에 대해 마을 주민이 공익신고 한 후 폭언 등 협박을 받고 신변보호 요청
- » 폐기물 무단 투기를 공익신고한 자의 가족이 피신고자로부터 폭언·폭행 등 위협을 받고 신변보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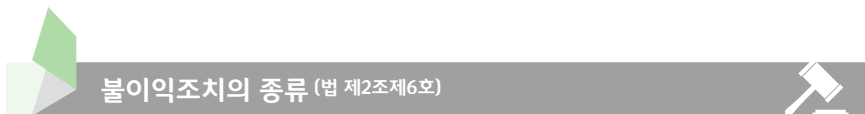
4. 보호조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1)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불이익조치의 종류 (법 제2조제6호)

-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불이익 조치 유형(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2) 공익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신청

● 신청권자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 등도 보호조치 대상자에 포함된다.

● 신청사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 뿐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구제절차 신청과의 관계

공익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중복신청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 보호조치 관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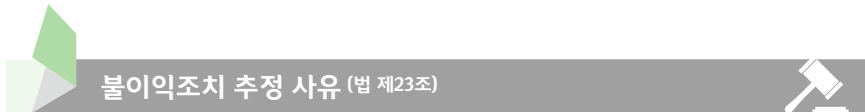
● 절차 및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진술 청취·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불이익조치의 추정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해당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화해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권고 전까지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을 통한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3)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종류 (법 제20조)

- ▶ 원상회복
-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호조치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보호조치결정’이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결정은 행정심판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결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각하 및 기각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공익신고자등 또는 대리인이 아닌 신청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 공익신고가 허위 신고 등 법 제10조제2항의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기간(불이익조치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 ▶▶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각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 ▶▶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 보호조치 결정 등의 이행 및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권고,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등이 확정되며, 불이익 조치자가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불이익조치자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시행령 제17조의2)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4) 특별보호조치 결정(신설)

보호대상이 되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신고자가 신고 당시 신고 내용이 특정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주 7대 경관 공익신고 처리 및 관련 판결

- ▶ 제주 7대경관 선정 투표 관련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공익신고함
 -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 △△회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당 전보 조치’ 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보호조치 결정 관련 행정소송
 - (1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조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2013.5월)
 - (2심)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이 공익신고임을 인정(2014.5월)
- ▶ △△회사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해임’ 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보호조치 결정 관련 행정소송
 - (1심) 공익신고 후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취소되어야 함(2015.5월)
 - (2심)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2015.9월)

최근 법원에서는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라. 책임감면 등

1) 형,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책임감면 사례

- ▶ △△시 쓰레기 소각장 환경침해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 해당 감독기관에서 공익신고를 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농도 측정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청하였고, 검찰은 해당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함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되었다.



관련 사례

- ▶ 산업기능 요원으로 방시능 보호장구 없이 복무하여 이러한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지정부서 외 부서에서 근무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만료 후 '의무중사 440일 연장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신고자 구제가 안됨

2)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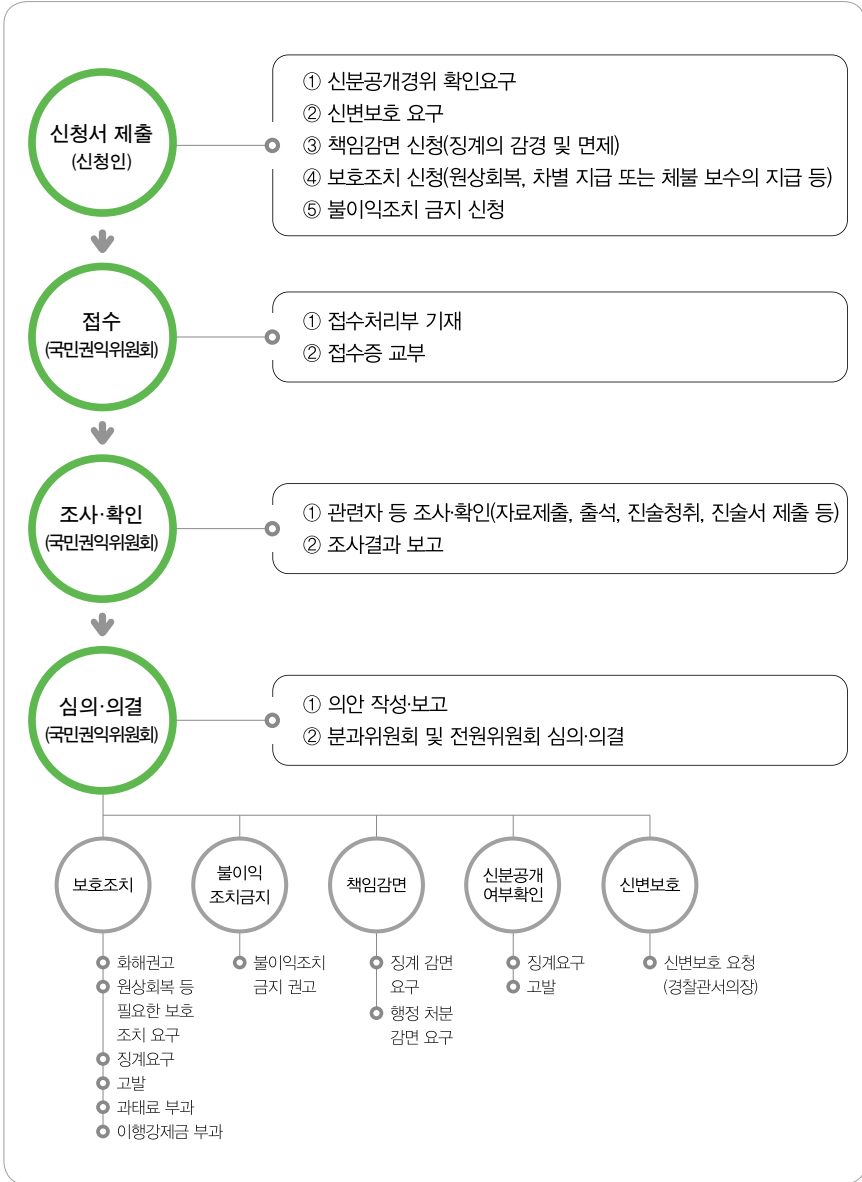
3)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제1장

제2장

제3장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제4장

제5장

별첨



Q 공익신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정형적 불이익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④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 물품계약·용역 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Q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A 공익신고자나 협조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Q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A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②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③ 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④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다.

Q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

A 그렇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A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도 허위 신고로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분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Q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분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익침해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Q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공익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고,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각하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언론에 제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이 인터넷상 기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익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Q 공익신고 준비행위란 무엇인가?

A 공익신고 준비행위라 함은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반 상황을 탐문하고 확인하는 등 포괄적인 행위이다.

소속 직원 등 내부 신고자가 신고 전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노출되어 인사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이 반드시 신고 후에 야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하기 전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자료 수집 등 준비 행위 단계에서의 노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Q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한 경우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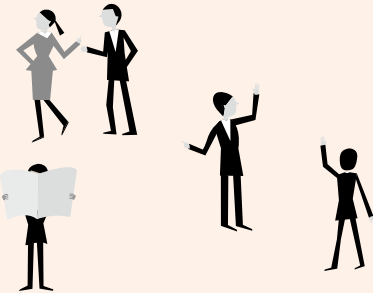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신고자가 스스로 정황상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제4장

1. 개요
2. 보상금
3. 포상금
4. 구조금
5. 중복지급의 금지 및 환수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1. 개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의무를 가지는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하여 공익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량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보상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및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제거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시 대상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0억원 까지 지급(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지급

현저히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내, 외부 공익신고자)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내, 외부 공익신고자)

2. 보상금

가. 지급 대상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비해,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별첨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시원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와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 사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

- ▶ 벌칙·통고처분
- ▶ 몰수·추징금 부과
-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 국세·지방세 부과
- ▶ 부담금·가산금 부과
-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다. 지급 절차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라. 산정기준

보상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액의 4~20%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상금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2)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금 감액 사유 (시행령 제22조)

- ▶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2014.10.31.부터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10.30.까지 신고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건수 제한 없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나, 그 이후 신고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보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중복수령은 금지된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제하고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고시 제4조)

- ▶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예) 신고자가 행정기관 A부서에서 '축산시설 명단'을, B부서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두 명단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수십 명의 축산업자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예) 개별적, 구체적 현장 증거없이 인터넷 지도 검색 등을 통해 농지·산지의 타 용도 불법 전용 화면만을 캡처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무작위 신고하는 행위
-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예) 신고자가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하고 이를 촬영 한 후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
- ▶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예) 「건축법」 위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피신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
- ▶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마. 상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증대되어 국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입과 보상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포상금

가. 지급 사유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더 큰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금은 다음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가 되었다.



포상금 지급 사유



-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내부 공익신고자로서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나.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익신고 기관에서 공익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추천시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추천 이외에도 공익증진의 기여도가 큰 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2억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경중, 기간, 금액, 인원 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구조금

가.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나. 지급 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및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다. 산정 기준

구조금 산정시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한다.

구조금 산정 기준 (시행령 제26조)

-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되,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대위 청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5. 중복지급의 금지 및 환수

가. 중복지급의 금지

이 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사항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구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상금·구조금 환수 사유 (법 제29조)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포상금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위 법 제29조와 같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2조에 의하여 보상금의 환수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Q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6년 1월25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Q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A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파파차리)의 신고가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면서 영세업소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다.

Q 외부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가?

A 일반 시민과 같은 외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는 행정력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행정 감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므로, 외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도 크다.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또는 공익신고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Q 보상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보상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20억원이며, 산정된 보상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Q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가?

A 보상 지급액의 산정시 ①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②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공익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④ 공익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⑤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Q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에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도 국민권익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 하는 과정에서 벌금·과징금·과태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판결이 확정 되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Q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무엇인가?

A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원상 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⑤그 밖에 중

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Q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색업체에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 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Q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 중 어느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우리 기관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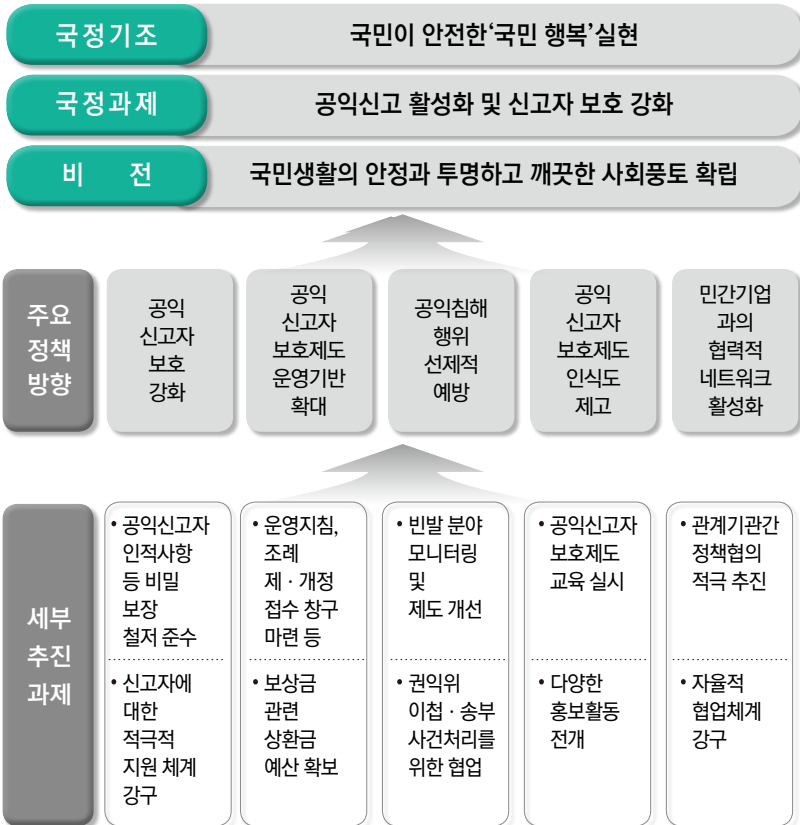
제5장

1.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적극적 지원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
3. 공익침해행위의 선제적 예방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5. 민간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제5장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적극적 지원

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 철저 준수

공익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임의로 노출, 공개, 보도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뿐 아니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행위를 한 사람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뿐 아니라 협조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밀보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고서 관리이다. 공익신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 기관이나 부서 내의 직원이라도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고서 및 사건 기록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 등에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신고를 조사·수사하는 과정 중에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기관이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방법·절차 및 처리 기한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절차 및 처리 기한을 준수하면 된다.

공익신고 사건을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이송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익신고 처리 절차의 유의사항과 함께 이송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결하고 소관 기관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종결 후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도 아니된다.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 강구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범죄,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책임감면 요구나 책임감면 필요성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상담실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상세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신변보호, 보상금·구조금 지급 신청 등 주요한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을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1월부터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

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공익신고 접수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접수 방법,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 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9월 배포한 바 있는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한 기관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6. 4월 배포한 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민간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나. 공익신고 접수 창구 마련 및 담당관 지정

원칙적으로 공익신고 기관에서는 별도의 공익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 창구는 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거나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를 링크로 연결하는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책임관 등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도 있다.

3. 공익침해행위의 선제적 예방

가.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 처리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 빈발 분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침해 대상 법률 준수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접수기관을 함께 안내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고,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 (표준안)

- ▶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국번없이 110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 ▶ 공익신고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처리를 위한 협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하는 공익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해 자료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하여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속히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세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일반, 법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 자료실(1398.acrc.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청렴연수원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라는 사이버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면서 신고자 보호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 자료실(1398.acr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각급 기관에서 대민 접점 등을 활용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민간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공익침해행위는 민간부문, 특히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책임경영,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내 민간 사업자 단체 등과 자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법	시행령
<p>[시행 2016.1.25.] [법률 제13443호, 2015.7.24., 일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p> <p>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p> <p>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p> <p>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34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 <2016.1.22.></p> <p>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p> <p>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p> <p>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p> <p>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p> <p>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p>

법	시행령
<p>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p> <p>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p> <p>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p>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p> <p>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p> <p>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p> <p>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p> <p>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고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p> <p>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p> <p>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p> <p>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p> <p>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p> <p>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p> <p>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p>	<p>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p>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	시행령
<p>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②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16.1.22.] <p>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익신고</p> <p>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p>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1.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익신고</p> <p>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p>②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법	시행령
<p>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 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p>	<p>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법	시행령
<p>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⑥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⑦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⑧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p> <p>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p>②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p>

법	시행령
	<p>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p> <p>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

법	시행령
<p>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p> <p>④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p> <p>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오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p>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p> <p>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법	시행령
<p>②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③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p>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p>	<p>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p>

법	시행령
<p>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자료·정보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정보 중 보원이 필요하면 그 자료·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보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1.22.]</p>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p>있다. <신설 2015.7.24.></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④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p>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들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②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들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③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들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p> <p>⑥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p>	

법	시행령
<p>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들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들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들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p>	<p>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공익신고자들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점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p>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p>③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p>	

법	시행령
<p>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원상회복 조치 2.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p> <p>②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③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p>	<p>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④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p> <p>③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법	시 행 령
<p>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p> <p>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p>	
<p>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p>	<p>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p>

법	시행령
<p>못한다.</p> <p>⑤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③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법	시 행 령
<p>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p>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p> <p>②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p> <p>③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법	시행령
<p>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p>②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4.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밖에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p>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p>④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4.8.]</p>

법	시 행 령
<h3>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h3>	<h3>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h3>
<p>제26조(보상금) ①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p>	<p>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p>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중사 중이거나 중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p>②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p> <p>③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p> <p>④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2.></p>

법	시행령
<p>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正本(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p> <p>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p> <p>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p>

법	시행령
<p>제26조의2(포상금)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p>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p>	<p>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p> <p>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 <p>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p>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법	시행령
<p>제27조(구조금) ①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정승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p>	<p>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p> <p>③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p> <p>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 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⑤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2.]</p> <p>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정승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법	시 행 령
<p>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p>②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p> <p>④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4.9.2.></p> <p>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9.2.]</p>
<p>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p> <p>②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p>	<p>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p>

법	시행령
<p>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③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p>②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있다.</p>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제2조 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제31조(과태료) ①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p>	

법	시행령
<p>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7.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p>③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p>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0472호, 2011.3.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2265호, 2014.1.1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p> <p>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3198호, 2011.9.30.></p> <p>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3845호, 2012.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⑨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3964호, 2012.7.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3443호, 2015.7.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부터 ⑦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3965호, 2012.7.2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4097호, 2012.9.7.> (뉴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	시 행 령
	<p>④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4. 「뉴시 관리 및 육성법」</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5300호, 2014.4.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5522호, 2014.7.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0. 「공인중개사법」</p> <p>③부터 ⑦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5586호, 2014.9.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p>

법	시행령
	<p>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6934호, 2016.1.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별표] <개정 2015.7.2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가축전염병 예방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개인정보 보호법」
7. 「개항질서법」
8. 「건강검진기본법」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1. 「건설기계관리법」
12. 「건설기술 진흥법」
13. 「건설산업기본법」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6. 「건축법」
17. 「건축사법」
18. 「검역법」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경륜·경정법」
21. 「경비업법」
22. 「계량에 관한 법률」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고용보험법」
26. 「골재채취법」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 「공연법」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0. 「공인중개사법」
31. 「공중위생관리법」
32. 「관광진흥법」
33. 「광산보안법」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5. 「교통안전법」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7. 「국가기술자격법」
38. 「국민건강증진법」
39. 「국민건강보험법」
40. 「국민영양관리법」
41. 「국민체육진흥법」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궤도운송법」
46. 「근로복지기본법」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금융지주회사법」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52. 「내수면어업법」
53. 「노인복지법」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8. 「농약관리법」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60. 「농어촌정비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62. 「농지법」
6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대기환경보전법」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9. 「대외무역법」
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1. 「도로교통법」
72. 「도로법」
73. 「도선법」
74. 「도시가스사업법」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6. 「도시철도법」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9. 「동물보호법」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1. 「말산업 육성법」
82. 「먹는물관리법」
83. 「모자보건법」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6. 「문화재보호법」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8. 「물류정책기본법」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4. 「보험업법」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8. 「비료관리법」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사료관리법」
102. 「사방사업법」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사회복지사업법」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07. 「산림보호법」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산업안전보건법」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산업표준화법」
115. 「산지관리법」
116. 「상표법」
117. 「상호저축은행법」
118. 「새마을금고법」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2. 「석면안전관리법」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선박안전법」
125. 「소금산업 진흥법」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

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소비자기본법」
13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1. 「소하천정비법」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수난구호법」
1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35. 「수도법」
13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수산업법」
138. 「수산자원관리법」
139. 「수상레저안전법」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습지보전법」
1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식물방역법」
145. 「식품신품종 보호법」
146. 「식품산업진흥법」
147. 「식품안전기본법」
148. 「식품위생법」
1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1. 「아동복지법」
1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3. 「아이돌봄 지원법」
154. 「약취방지법」
1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약사법」
158. 「양곡관리법」
1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16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161. 「어선법」
- 162. 「어장관리법」
- 163. 「어촌·어항법」
- 1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166. 「여신전문금융업법」
- 16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1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69. 「영유아보육법」
-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7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173. 「외국환거래법」
- 174. 「외식산업 진흥법」
- 17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76. 「원자력안전법」
- 177. 「위생사에 관한 법률」
- 178. 「위험물안전관리법」
- 17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81. 「유아교육법」
- 18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183. 「은행법」
- 18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86. 「의료기기법」
- 18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88. 「의료법」
- 18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190. 「인삼산업법」
- 1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92. 「임대주택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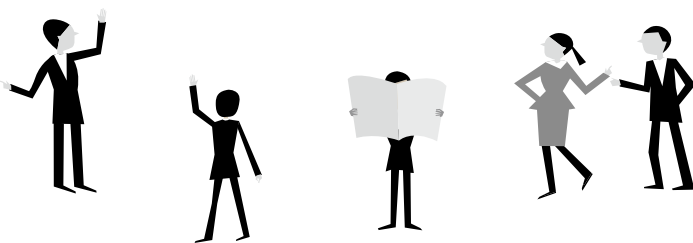
제5장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9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4. 「입양특례법」
195. 「자격기본법」
196. 「자동차관리법」
197. 「자연공원법」
198. 「자연재해대책법」
199. 「자연환경보전법」
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4. 「장애인복지법」
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6. 「재해구호법」
20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8. 「전기공사업법」
209. 「전기사업법」
21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2. 「전기통신사업법」
213. 「전력기술관리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7. 「정보통신공사업법」
2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0. 「정신보건법」
22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 「제품안전기본법」
224. 「중자산업법」
2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26. 「주택법」
- 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2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229. 「지역보건법」
- 230. 「지진재해대책법」
- 231. 「지하수법」
- 232. 「직업안정법」
- 23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34. 「집단에너지사업법」
- 235. 「철도사업법」
- 236. 「철도안전법」
- 237. 「청소년 보호법」
- 238. 「청소년활동 진흥법」
- 2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4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1. 「초지법」
- 24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3. 「축산물 위생관리법」
- 244. 「축산법」
- 24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246. 「토양환경보전법」
- 247. 「폐기물관리법」
- 24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4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5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2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53. 「하수도법」
- 254. 「하천법」
- 255. 「학교급식법」
- 256. 「학교보건법」
- 2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59. 「한국마사회법」
- 26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61. 「항공법」
- 262. 「항공보안법」
- 263. 「항로표지법」
- 264. 「항만법」
- 265. 「항만운송사업법」
- 266. 「해사안전법」
- 26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9. 「해양환경관리법」
- 270. 「해운법」
- 271. 「혈액관리법」
- 2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73. 「화장품법」
- 274. 「화학물질관리법」
- 27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276. 「환경보건법」
- 27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78. 「환경영향평가법」
- 27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16. 1. 22.>

[별표 1의2] <신설 2016.1.2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금 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6.1.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500	1,000	2,000
2) 참고인		200	400	800
3) 신청인		100	200	300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참고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나. 관계 기관 · 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400	700	1,000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나)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다)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			2,000 1,000 500 500 500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공익심사정책과 T.044-200-7752

발행일 2016년 5월

디자인·인쇄 사회복지법인 흥애원 T.044-868-2634~5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비매품

